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늘 푸 른 요 양 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2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 ① 책임자: 시설장
- ② 운영(담당)자: 선임 사회복지사
- ③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 (부재시 선임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3조(CCTV 설치) 늘푸른요양원 CCTV는 총 32대(병설기관 포함)를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침실) 12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공동거실(복도 등) 8대, 엘리베이터 1대, 현관(출입구) 5대, 기타 병설기관 내·외부 3대

①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주출입구 및 주변경계부에 설치한다.

② CCTV 운영 장비는 상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가. CCTV 운영 모니터

나. 디지털 녹화기

다. 그 밖의 부대장치

제4조(CCTV 성능 및 촬영범위 등) 늘푸른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2. CCTV 촬영범위 : CCTV 설치된 생활실 및 복도, 주출입구 등
3.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촬영
4.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이상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상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단,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8.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300x300)주 출입구, 주차장 입구, (297x210)시설 내 안내게시판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5조(CCTV 열람가능사유) 노인장기요양법 제 33조 3의 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열람할 수 있다.

- 1.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2.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 39조 11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4.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6조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절차 및 확인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항에 의거하여

1.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②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열람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란, 수급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만 허용된다)
- ③ 관계공무원 등의 열람시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신분증 및 공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또는 공문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CCTV 운영자의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법 제 33조3의 2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3.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제9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⑤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②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제5조에 따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 1.책임자는 제4조제6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2.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 1.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CCTV설치·운영 관리대장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늘푸른요양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늘푸른요양원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늘푸른요양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늘푸른요양원 귀하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illegible]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60일정상 여부)	안내판 설치 장소 부착 유무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 여부	잠금장치 정상 여부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정상 여부	성명	서명	
1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2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3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4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5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6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7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8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9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0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1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2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3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4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5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60일정상 여부)	안내판 설치 장소 부착 유무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 여부	잠금장치 정상 여부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정상 여부	성명	서명	
1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2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3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4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5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6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7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8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9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0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1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2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3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4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15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 여 ☐ 부	☐ 유 ☐ 무	☐ 여 ☐ 부			

C C T V 설 치 안 내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시설내부(생활실, 복도, 식당등), 엘리베이터, 출입구, 시설외부(주차장 및 시설 주변)
책 임 자	책임자 : 늘푸른요양원 시설장 [연락처] 062-361-9500 운영자 : 늘푸른요양원 사회복지사 [연락처] 062-361-9500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늘푸른요양원 (1-29140-00284)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늘푸른요양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늘푸른요양원 귀하